

의안번호	2216207
의 퇴 인	고민정 의원
회 답 일	2026.02.23.
추계번호	26C033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6조의2 (이자의 면제)	(제2항) 채무자가 대출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소득금액(이하 “연간소득금액”이라 한다)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제3조제2호가목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및 제3조제2호나목 중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 대학생이 속한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 인정액이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200 이하에 속하는 가구의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6조의2 (이자의 면제)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제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 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대출 당시 학자금 지원구간¹⁾ 5구간 이하인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있으며²⁾, '26.7부터 동 범위가 6구간 이하로 확대될 예정임

1) 학자금 지원구간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학자금 지원구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값으로, 경계값은 아래와 같음

- 이외에 군 복무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자녀 등이 동법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됨
 - 이에 정부는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 재원 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채권 이자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26년 603억 5,900만원이 편성됨
 - * [참고자료 1] 취업 후 학자금대출 관련 예산 세부내역
 - 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하 “비수도권”) 대학생의 경우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로 확대하려는 것임
 - 참고로,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은 “수도권”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로 규정하고 있음³⁾
-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이자 면제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향후 대상자 인원, 대출잔액 및 상환기간 등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이를 산출하기 어려움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학자금 지원구간 7~8구간에 해당하는 비수도권 소재 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분으로 대출잔액에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가능함
 - 그러나 현시점에서 신규 대출 및 상환 내역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미래의 연도별 대출잔액 규모 추정에 한계가 있음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중위소득 비율	30%	50%	70%	90%	100%	130%	150%	200%	300%	-

자료: 한국장학재단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이자 면제) ③ 채무자(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대출시점에 가구 소득인정액(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대출시점부터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다만, 채무자가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 소득구간별·지역별 취업 후 학자금대출 잔액 통계는 존재하나, 이는 과거 대출·상환의 누적치에 해당하므로 향후 일정한 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기 어려움
 - * [참고자료 2] 소득구간별·지역별 취업 후 학자금대출 잔액
 - 또한, 대상자의 이자 면제 기간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통계적 근거가 부재함
 - 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대상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여 의무상환이 개시되기 전까지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규정함
 - 그러나, 비수도권 소재 대학생의 상환기준소득 도달 기간 등에 대한 통계자료가 부재하여 정확한 이자 면제 종료 시점을 특정하기 곤란함
- 이에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

[참고자료 1] 취업 후 학자금대출 관련 예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5	'26
재원 조달 비용 지원	186,274	163,985
이전연도 채권발행분	192,174	191,374
당해연도 채권발행분	32,589	32,970
이자면제 지원분	△38,489	△60,359
AI/SW분야 학업장려대출	—	2,923
이자면제 지원	38,489	60,359
군이자면제	529	495
기초·차상위 이자면제	5,547	4,921
다자녀 이자면제	17,731	18,640
중위소득 이하 등 이자면제	9,844	32,583
상환 유예자 이자면제	4,838	3,720
합계	224,763	227,267

자료: 교육부 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참고자료 2] 소득구간별·지역별 취업 후 학자금대출 잔액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전체		수도권		비수도권		비수도권 비율	
	대출잔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기초	467,913	81,141	173,946	29,208	293,967	53,590	62.8%	64.7%
차상위	442,931	89,278	198,668	38,623	244,264	52,071	55.1%	57.4%
1구간	1,086,951	240,546	470,881	101,668	616,070	141,588	56.7%	58.2%
2구간	953,630	244,332	406,890	102,353	546,740	143,988	57.3%	58.5%
3구간	752,565	205,738	320,439	85,949	432,126	121,178	57.4%	58.5%
4구간	682,697	176,779	292,638	74,390	390,059	103,373	57.1%	58.2%
5구간	367,142	104,332	154,631	43,312	212,511	61,304	57.9%	58.6%
6구간	622,166	156,109	260,921	65,925	361,245	90,876	58.1%	58.0%
7구간	417,790	106,298	180,274	45,442	237,517	61,216	56.9%	57.4%
8구간	484,941	109,414	217,581	48,591	267,360	61,363	55.1%	55.8%
9구간	207,490	37,088	100,811	17,413	106,678	19,866	51.4%	53.3%
10구간	150,007	20,610	81,083	10,287	68,924	10,488	45.9%	50.5%
기타	27,299	7,584	12,799	3,244	14,500	4,356	53.1%	57.3%
합계	6,663,523	966,353	2,871,562	410,778	3,791,961	574,304	56.9%	58.3%

주: 2025년 말 대출잔액 기준 자료임
자료: 교육부